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제2호
----------	-----------

제출연월일: 2007. 1. 12.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수정(안 제4조, 제5조)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6. 11. 22 ~ 2006. 12. 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비 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을 “지원체계”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를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②(생략)</p> <p>③ <u>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u>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지원신청 등) ①~②(생략)</p> <p>③ <u>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u>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지원체계 -----.</p> <p>제5조(지원신청 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u>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u> -----.</p>

# 관계법령 발췌

##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 (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실시범위) ①학교급식실시학교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되, 미리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0.12.22, 1994.6.17, 1997.4.29>

②교육감은 재정여건, 학교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등의 경비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범위를 확대지정하여야 한

다.<개정 1982.3.20, 1990.2.12, 1990.12.22, 1994.6.17>

③삭제<1994.6.17>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  
에 필요한 경비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  
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  
2호의 경비에 한한다.<개정 1994.6.17, 1995.4.6, 1997.4.29>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29>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  
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3.20, 1984.2.25, 1990.2.12, 1990.12.22,  
1991.2.1, 1994.6.17, 1996.2.22, 1997.4.29>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  
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제2  
항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중 도서벽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  
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  
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의 3분의1과 제2항제2호의 경비

3. 교육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4.29>

1.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학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학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의 3분의 1

3. 교육감이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급식학교"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한 학교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7.5.13>